

# 치료목적사용면책(TUE) 신청 관련 안내

## □ TUE 신청 전 확인사항

○ (금지약물 검색) KADA 누리집 접속하여 '금지약물 검색서비스' 통해 검색

구분		내용
경기기간 중	경기기간 외	
○ 허용	○ 허용	· 금지가 아니므로 TUE 신청이 필요 없음
⊘ 금지	⊘ 금지	· 사용 필요성이 발생한 즉시 TUE 승인을 받아야 함
⊘ 금지	○ 허용	· 선수의 경기기간 중이 아닐 때는 금지가 아님. 단, 경기기간 외에 사용했다라도 경기기간 중 도핑검사에서 검출되면 규정위반에 해당 · 경기기간 중에는 금지되지만, 사용이 필요한 경우 TUE 승인을 받아야 함
▲정보확인	▲정보확인	· 정보확인란에 제시된 정보에 따라 금지여부가 달라짐 · 금지여부에 따라 TUE 신청 판단

## □ TUE 신청 대상

○ (사전 신청 필수 대상)

사전 신청 필수 대상
· 국제경기연맹(IF)이 지정한 국제수준 선수
· KADA 검사대상명부(RTP) 또는 검사대상후보명부(TP)에 포함된 선수
· 올림픽/패럴림픽, 아시아경기대회/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선발·확정된 국가대표 선수
· 올림픽/패럴림픽, 아시아경기대회/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출전을 위한 국·내외 선발전에 참가하는 선수
·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수

\* 위 필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, 사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

○ (사후 신청) 사전 신청 대상이 아닌 모든 선수

○ (예외 적용) 사전 신청 대상 선수라도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 신청 가능

사후 신청 조건
· 응급치료 또는 급성 의료조치가 필요했던 경우
· 기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 또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
· 경기기간 외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로 인해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을 통지받은 경우(예시. S9.글루코코르티코이드)

 **TUE 마법사 활용** ([https://www.kada.or.kr/kada?where=tue/tue\\_wizard](https://www.kada.or.kr/kada?where=tue/tue_wizard))

○ 금지약물, 질병 유형에 따른 TUE 신청 세부절차 안내 프로그램

## □ TUE 신청 절차

### ○ (신청방법)

- 이메일 신청: [tue@kada.or.kr](mailto:tue@kada.or.kr)
- 팩스 신청: 02-2045-9899
- 온라인 신청\*: <https://submit.kada-ad.or.kr/tue/dispatch.act>  
\* KADA 누리집 → ‘치료목적사용면책’ 화면 → TUE 신청방법 내 ‘제출방법③ 온라인:프로그램 바로가기’ 클릭

### ○ (신청서류)

- TUE 신청서
  - 진단서 또는 소견서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  - 진료기록지(대체치료 내역을 포함한 진료기록)
  - 검사결과(해당 질병\* 관련 검사결과 서류) \* 피부질환의 경우, 병변부위 사진 및 병변과 선수 본인의 얼굴이 함께 나오는 사진 함께 첨부
- ※ 제출된 자료만으로 선수의 의학적 상태가 TUE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## □ TUE 심사

- (심사진행) 한국도핑방지위원회 TUE 위원회에서 승인여부 결정
- (심사기간)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약 7일 소요(단, 추가자료 요청이나 심사건수 증가로 인해 심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)
- (승인기준) 사전/사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승인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승인

TUE 승인 기준
· 금지약물/방법이 관련 임상 증거에 따라 진단된 질병 치료목적으로 필요한 경우
· 금지약물/방법의 치료목적사용이 선수가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상의 추가적 경기력 향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
· 선수의 질병치료에 사용가능한 적절한 대체치료가 없는 경우
· TUE 신청 사유가 기존에 TUE 승인 없이 사용한 금지약물/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

### ○ (심사결과)

- 승인: 승인된 용량, 용법, 경로, 기간 대로 금지약물/방법 사용 가능
- 불승인: 사용 허가 안 됨
- 반려: TUE 신청 대상이 아님(심사 필요 없음)